#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김미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565 발의연월일: 2025. 1. 16.

발 의 자:김미애·성일종·김형동

주진우 • 권영진 • 이철규

최수진 · 조승환 · 조정훈

정점식 의원(10인)

#### 제안이유

국가는 감염병의 확산을 예방하고 국민보건을 증진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고,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국가보상을 실시하고 있음.

하지만 국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으로 사실상 전 국민에게 예방접종을 권고하면서, 예방접종을 받은 후에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에 피해보상을 청구하였음에도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인과성을 인정하고 있어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으로 발생한 질병 등에 대하여 예방접종과 질병 등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 등의 사실이증명된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예방접종 이상반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고 예방

접종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국가는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장애·사망 및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하고 이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함(안 제3조).
- 다. 국가는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등과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상을 하여야 함(안 제5조).
- 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를 둠(안 제6조).
- 마. 질병관리청장은 피해보상 청구가 있는 날부터 120일 이내에 피해 보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상여부를 결정하고 지체없이 청 구인에게 결정 내용을 통보함(안 제11조 및 제12조).
- 바.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질병 등 또는 이상반응의 발생 사이에 시간 적 개연성 등의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질병 등 또는 이상반응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함(안 제13조).
- 사. 피해보상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보상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건의 심의·의결은 재심위 원회에서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 제1조(목적) 이 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코로나19 예방접종"이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 19"라 한다)의 발생 및 유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예방접종을 말한다.
  - 2.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그 예방접종 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증상 또는 질병으로서 해당 예 방접종과 시간적 개연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장애, 사망 및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5조(국가의 피해보상) ① 국가는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장애, 사망(이하 "질병등"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상을 하여야 한다.
  - 1. 질병 또는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 진료비 전액 및 정액 간병비
  - 2. 장애인이 된 사람: 일시보상금
  - 3. 사망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 대한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 ② 제1항에 따른 피해보상을 청구하려는 사람(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④ 제2항에 따른 피해보상 청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
- 제6조(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 ① 제5조에 따른 피해보상 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장 소속으로 코로나19 예방접

- 종 피해보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위촉한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인 및 약품 전문가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5명
  - 2. 법학, 행정학, 사회학, 의학, 병리학, 약학, 미생물학, 면역학 등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 로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로 재직하거나 재직하 였던 사람 4명
  -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5명
  -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법인·단체의 장이 추천하여 관련 분 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명
  -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위원의 결격 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면직되거나 해촉되다.
- 제9조(의견진술) ① 청구인은 위원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담당 의료인, 그 밖에 해당 전문가로 하여금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 다.
- 제10조(피해조사) 위원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통하여 피해보상 여부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 제11조(피해보상의 결정) ① 질병관리청장은 제5조제3항에 따른 피해보상 청구가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피해보상 여부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20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기산하여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결정기간의 산정에 있어서 의학적 판단을 위한 진 단·검사·자문 등에 필요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결정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12조(피해보상 결정과정에서의 통지 의무) ① 질병관리청장은 제11 조제1항에 따라 결정을 하면 지체없이 청구인에게 결정 내용을 통 보하여야 한다.
  - ②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과 이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한 경우
  - 2. 제11조제2항에 따른 의학적 판단을 위한 진단·검사·자문 등으로 인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의 내용,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인과관계의 추정) 제5조제1항에 따른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실이 모두 증명된 경우에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질병등 또는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 1.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질병등 또는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이 존재할 것
  - 2.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질병등 또는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그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을 것

- 3. 질병등 또는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원인불명이거나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닐 것제14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1조에 따른 피해보상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은 피해보상 결정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경우 이의신청인은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해보상 청구"는 "이의신청"으로, "위원회"는 "재심위원회"로 본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재심위원회) ① 제14조에 따른 이의신청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 회(이하 "재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재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재심위원회"로 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질병관리청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위

원회 및 재심위원회 구성 등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 제3조(이의신청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는 이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제4조(보상결정 및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감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는 이 법에 따라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전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청구를 한 경우는 이 법에 따라 청구한 것으로 본다.